

#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박준일)

## 가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 
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
    - 보존 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(보존용재산)으로 통합함
    -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-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(2008.12.26)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

○ 현행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살펴보면

- 공용재산(청사등), 공공용재산(도로 및 교량등) 및 기업용(공립 병원등)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인 행정재산과,
- 문화재, 보존임야등 법령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보존재산과,
- 행정 및 보존재산 이외의 사용·보유목적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음

○ 개정안에서는 현행의 3분류 재산체계를, 보존 재산을 행정 재산에 편입시켜 2분류 체계로 간소화하면서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있음

-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이미지가 있고,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별 차이가 없으며,
- 보존재산도 결국 문화재등의 특정한 목적에 공여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,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### 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### 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1.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